##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세칙

제 정 2006. 7.11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법, 동법시행령,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고 함)는 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. ②운영위원회는 사장의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,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③추천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법 제 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운영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민간위원 중에 후보자로 지원하거나, 추천된 자는 추천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.
- 제3조(위원장) ①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.
  -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임무) ①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모집하고, 모집된 후보자를 조사·평가하여 3인의 추천후보자를 선정하며, 그 추천후보자에 대한 선정의 근거와 의사록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
  - ②추천위원회는 한국투자공사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다.
- 제5조(추천후보의 자격)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필요한 업무 수행 경험 등을 갖추고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갈 의지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.
- 제6조(추천위원회의 소집) ①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

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, 장소, 회의 의제 등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의결)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8조(최종심의 대상 후보 군의 확정) ①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와 공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 공모 절차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후보 군을 확정할 수 있다.
  -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를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  - ③추천위원회는 위 공모에 응한 후보 군과 전문기관의 추천 등에 의한 후보 군 중에서 제출서류 심사에 의하여 6인의 최종심의 대상 후보 군을 확정한다.
  - ④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 군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기준과 확정방법을 심의 전에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  - ⑤지원자가 6인 이내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후보 군의 확정절차 없이 최종심의를 진행 할 수 있다.
- 제9조(후보자확정과 심의 기준) ①추천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최종심의 대상 후보 군에 속한 후보자 중에서 면접심사를 통하여 3인을 추천후보자로 확정한다.
  - ②추천위원회는 추천후보자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기준과 추천후보자 확정 방법을 심의 전에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3인 이내인 경우 위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추천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.
  - ③추천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추천후보자 확정 심의 과정은 법령과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의사록) 추천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한다.
  - 1. 개회, 회의의 중지, 산회, 폐회의 일시
  - 2. 회의 장소

- 3. 출석 및 결석 위원과 참여자의 성명
- 4. 회의 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
- 5.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추천 심의 경과의 보고) 추천위원회는 추천후보자를 확정하는 경우 그 즉 시 전조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추천위원회의 실무 보좌)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사 직원 중에서 실무보좌역을 정하여 실무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의 수당)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비밀누설의 금지)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5조(세부 사항)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 모집과 추천후보 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